

1. 관련 규정

○ 2018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가. 전문의의 정의

1)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을 말하며,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에 적용한다.

2) 지도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기관)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레지던트 수련병원(기관) 지정에 적용한다.

가)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련병원(기관)장에 의하여 새로 지정된 지도전문의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학회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에 한하여는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5년으로 한다.